

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67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30.

발 의 자 : 김상훈 · 김선교 · 이현승
김은혜 · 최보운 · 유용원
김재섭 · 주호영 · 이달희
이만희 · 안철수 · 김장겸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반도체, 2차전지, 로봇,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리튬 · 흑연 · 코발트 · 니켈 · 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, 국제 분쟁 등으로 광물자원이 전략적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 제정 시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면서 통합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종전에 수행하던 해외자원개발의 탐사 · 개발사업이 공단의 사업에서 제외되고, 기존 해외자산은 매각 후 관련 출자사업을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이 제한되어 국가 차원의 해외개발을 통한 핵심광물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공단의 사업 범위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 · 개발, 핵심광물 개발사업 발굴 · 관리 지원,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핵심광물의 비축 및 재자원화를 포함하며, 해외자산 매각 완료 시 관련 출자사업을 폐지하도록 한 부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단의 해외자원개발사업

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자원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1항 등).

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에 제16호의2부터 제1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7호 중 “제16호까지의”를 “제16호까지, 제16호의2부터 제16호의4까지의”로 한다.

16의2. 해외광물자원의 탐사·개발

16의3. 「국가자원안보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핵심광물(이하 이 조에서 “핵심광물”이라 한다) 개발사업 발굴·관리 지원

16의4.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핵심광물의 비축 및 재자원화
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8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사업)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1. ~ 16.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17. 제1호부터 <u>제16호까지</u> 의 사 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또 는 분야에 대한 용역·연구· 통계관리·정보화 및 부대사 업 18. (생 략) ② (생 략)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 공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(해외 자산 매각 등을 위	제8조(사업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16. (현행과 같음) <u>16의2. 해외광물자원의 탐사·</u> <u> 개발</u> <u>16의3. 「국가자원안보 특별</u> <u> 법」 제2조에 따른 핵심광물</u> <u> (이하 이 조에서 “핵심광물”</u> <u> 이라 한다) 개발사업 발굴·관</u> <u> 리 지원</u> <u>16의4. 수급 및 가격 안정화를</u> <u> 위한 핵심광물의 비축 및 재</u> <u> 자원화</u> 17. ----- <u>제16호까지, 제1</u> <u> 6호의2부터 제16호의4까지</u> ----- ----- ----- 18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17919호 한국광해광업 공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(해외 자산 매각 등을 위

한 경과조치) ① ~ ⑦ (생략) <u>⑧ 제8조제1항제9호는 해외자산 전체가 매각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.</u>	한 경과조치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--	---